

이달의 상생불 참여방법 안내

매월 자발적 상생협력 추진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기념 및 포상하는 「이달의 상생협력 우수사례(상생불)」 참여방법 및 선정계획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 사업 개요

- (추진목적) 매월 상생협력 활동 실적 중 우수실적을 발굴하고 기념 포상을 통해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
- (참여대상) 동반성장 우수기업(세부내용 불임1 참고)
- (참여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매월 참여 안내 공고 후 다음달 10일 전까지 상생협력 활동 실적*을 협력재단에 제출(이메일)

* 실적 제출 건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해당 월에 1개 기업당 1개 실적만 선정 가능
** 중복 실적 제출 지양, 다양한 분야의 상생협력 활동 실적 제출 필요

- (선정방법) 상생협력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상생협력 활동의 중요도·난이도, 이행노력·성과 등을 대면 평가를 통해 선정
- 평가시 사회적 평판 등 결격사항을 고려하여 결격사유가 인정될 경우 선정 제외
- * 사후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사회적 평판 등 결격 사항 >

- 최근 3개월 이내 범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라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공정위/산업부/중기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상생법, 생계형적합업종법
 - ** 경고조치,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 과징금 공표 및 처분 확정
- 최근 3개월 이내 대기업 임직원 또는 법인이 협력사와 관계에서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윤리와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 * 법원의 판결은 1심부터 적용됨
- 최근 3개월 이내 불공정거래 등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논란을 야기한 경우

- (인센티브) 매월 우수실적(상위 5건 이내)에 대해 '상생불'을 지급하고, 최다 상생불 획득 기업을 올해의 상생협력 기업으로 선정·홍보(동반성장 포상 가점*, 우수사례집 발간 등에 활용)

* 훈포장, 대통령 표창 등 기업개인 유공자 선정에 가점(상생불 1개당 0.5점/최대 3점)

2. 11월 상생협력 활동 실적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 '22.12.9(금), 18:00
- 제출자료
 - ① '22.11월 기준 상생협력 활동 실적('불임2'참조)
 - ② 제출 실적 관련 증빙자료(ex. 관련 보도자료, 관련 내부 기안 등)
 - * 모든 증빙자료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PDF, 워드, 엑셀 등)
 - ** 단순 인터넷 링크 표시 지양(보도자료는 PDF형태로 제출)
 - ③ 결격사항 자가점검표('불임3' 참조)
- (제출방법) 협력재단에 이메일 회신 (inclusive@win-win.or.kr)

3. 평가 항목 및 선정기준

- (평가항목) 기업에 제출한 상생협력 활동 실적의 중요도, 난이도, 이행노력, 추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세부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평가 주요 내용
중요도·난이도	▶ 상생협력 활동 실적이 중소기업 등의 성장에 기여 하는가? ▶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인가? * ESG경영, 탄소중립,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 등 ▶ 내외부 갈등, 반발 등으로 추진이 쉽지 않은 과제인가? ▶ 관련 산업 내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가? ▶ 기타, 기업 입장에서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상생협력 활동인가?
이행노력	▶ 내부 인력 및 인프라 등을 적극 활용하였는가? ▶ 협력 기업 등과 의견 청취 및 네트워킹 노력 등에 기울었는가? * 워크숍 개최, 정기적 회의 등 온·오프라인 소통 노력 여부 ▶ 외부 인력 및 기관, 기업 등과 협력이 이루어졌는가? ▶ 최고경영자의 관련 대내외 공표 및 의지 표명이 있었는가? ▶ 기타, 상생협력 활동 등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
추진성과	▶ 상생협력 활동으로 추진실적 및 성과가 있는가? * 추진실적, 관련 긍정적 통계 등 구체적인 성과 및 효과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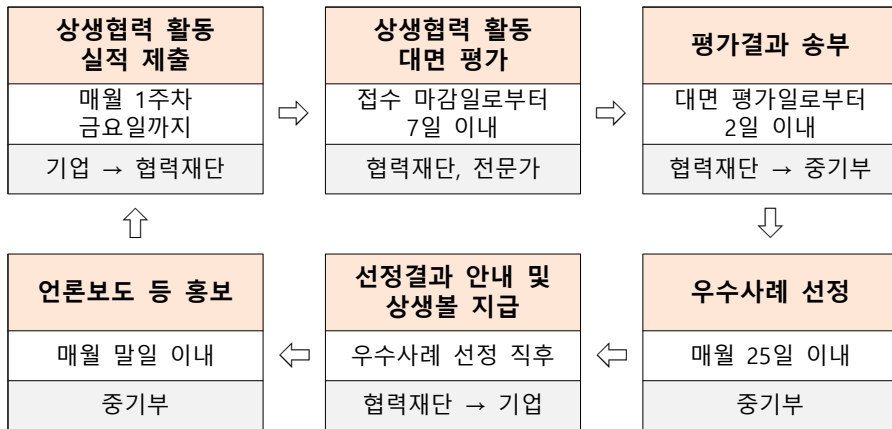
* 점수 배점 등 세부사항은 '불임4' 참조

- (선정기준)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상위 5개 사례 선정
- (결격기준) 평가 결과 종합평점 80점 미만이거나 사회적 평판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

* 결격사항은 ①자가점검표, ②관계기관 협조, ③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점검
 ** 자세한 결격사유는 사업개요(선정방법) 참고

4. 추진일정 및 문의처

□ 추진 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 안내

□ 문의처

- (협력재단) 02 - 368 - 8936, 8761 (중기부) 044 - 204 - 7912

붙임 1

동반성장 우수 기업

① 동반성장 평가 '우수' 등급 이상 기업('20~'21년도 기준)

등급	기업명(가나다순)	
최우수 및 우수 (122개사)	<동반성장 평가 우수 기업(대기업, '20~'21)> 경신, 계룡건설산업, 기아, 네이버, 농심, 대상, 동부건설, 두산,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롯데GRS, 롯데건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쇼핑(마트부문), 롯데쇼핑(백화점부문), 롯데정보통신,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하이마트, 롯데홈쇼핑, 삼성SDI, 삼성SDS,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물산(패션부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삼성전자, 세메스, 신세계건설, 신세계디에프,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인테리어, 아모레퍼시픽,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엔에스쇼핑, 오픈티, 오리온, 원익PS, 유한킴벌리, 이노션, 이니스프리,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 이마트, 이마트24, 자이센앤에이, 제일기획, 중흥토건, 카카오, 코리아세븐, 코웨이, 태영건설, 파리크라상, 포스코, 포스코ICT,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풀무원식품, 하림, 한국인삼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 한라, 한샘, 한신공영, 한양, 한화, 한화건설,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현대미포조선, 현대백화점, 현대상호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오트모버,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현대트랜시스, 현대홈쇼핑, 호반건설, 호텔신라, 화신, 효성중공업, BGF리테일, CJ온스타일, CJ올리브영, CJ제일제당, CJ푸드빌, DL건설, DL이앤씨, GS건설, GS리테일(GS SHOP), GS리테일(GS25), HDC현대산업개발, HL만도, HSD엔진, KCC, KCC건설, KT, LG CNS,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LS일렉트릭, LX하우시스, SK실트론, SK에코플랜트, SK주식회사, SK지오센트릭, SK텔레콤, SK하이닉스, SPC삼립	
	<동반성장 평가 우수 기업(공공기관 '20~'21)>	
최우수 및 우수 (48개사)	공기업형	준정부·기타형
	그랜드코리아레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부동산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전KDN, 해양환경공단,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울림팩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울림팩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디지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② 신(新)동반성장 선도기업

기업명(가나다순)	
신(新)동반성장 협약 기업	현대자동차

③ 자발적 상생협력 협약 기업

기업명(가나다순)	
자발적 상생협력 협약 기업 (36개사)	국가철도공단, 네이버, 대상주식회사, 바디프랜드, 비자, 삼성전자, 소프트뱅크벤처스,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신한금융그룹, 우리은행, 우아한형제들, 이마트, 컬리,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프레시지, 하나은행,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시스템, 현대자동차그룹, 호반그룹, ARM, CJ ENM, CJ대한통운,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T, LG화학, LX인터내셔널, NHN커머스, SGI서울보증, SK E&S, SKC, SK에코플랜트

붙임 2 제출 양식

○○○기업 상생협력 활동 실적

※ 상생협력 활동 실적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

※ 필요시 양식을 변경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기업명	○○○	실적 년월	ex) 22년 10월 실적
상생협력 활동 명	ex) 소상공인 에너지 절감 사업		
중요도/ 난이도	ex) 세부평가항목 참조하여 작성		
이행노력	ex) 세부평가항목 참조하여 작성		
추진성과	○ 우수사례, 추진실적 등 작성 ex) 세부평가항목 참조하여 작성		
	증빙자료		
		정량적 성과	정성적 성과

□ 결격 사항

- 최근 3개월 이내 범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상생법, 생계형적합업종법 위반사항 중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정위, 산업부, 중기부의 행정처분*이 있었던 사항
 - * 경고조치,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 과징금 공표 및 처분 확정
 - 대기업 임직원 또는 법인이 협력사와 관계에서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 * 법원의 판결은 1심부터 적용됨
- 최근 3개월 이내 불공정거래 등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논란을 야기한 기업

※ (참고) 자가 점검표

점 검 사 항	해당 여부
○ 최근 3개월 이내 동반성장 관련 법령*에 따라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정위, 산업부, 중기부의 행정 처분**이 있었던 사항 *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상생법, 생계형적합업종법 ** 경고조치,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 과징금 처분 확정	□있다, □없다
○ 최근 3개월 이내 대기업 임직원 또는 법인이 협력사와 관계에서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윤리와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의 판결은 1심부터 적용됨	□있다, □없다
○ 최근 3개월 이내 불공정거래 등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논란을 야기한 경우	□있다, □없다
위 사항은 충분히 사실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허위 등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이달의 상생볼」 선정 제외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기 업 명 : 작성일자 :	확 인 자 : 대표자명 (서명 등)

< 참고 > 동반성장지수 감점 항목

□ 범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 범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법원의 판결
 -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상생법, 생계형적합업종법 위반사항 중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정위, 산업부, 중기부의 행정 처분이 있었던 사항
 - 대기업 임직원 또는 법인이 협력사와 관계에서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 * 동반성장에 직접적 피해가 있었던 행위에 대해 적용
 - * 법원의 판결은 1심부터 적용하되, 확정판결을 최종적용
 - *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해 기부과된 감점의 근거 사실에 변동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형사 상 무죄 입증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입증 사실에 따라 감점을 변경(또는 취소)하고 이에 따라 등급을 조정
 - 단,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형사 상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보상 차원에서 당해 연도의 동반성장 지수 평가 시 기존 감점과 동일한 가점 부여
-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점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적용
 - * 동일 행위에 대해 중복 감점 배제
- (배점) -5.0점

배점	행정처분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감점 기준	세부 내용
-0.5	• 공정위, 산업부, 중기부의 법률에 근거한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 등급 강등 심의 요청은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협력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 위반 행위 중 해당기간 2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	•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에 한함
-1.0	• 공정위, 산업부, 중기부의 법률에 근거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시정조치에는 시정권고, 시정명령, 공표명령이 포함	
-2.0	• 공정거래법, 상생법, 생계형적합업종법의 위반에 따라 공정위, 산업부, 중기부의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	• 공정위 하도급법 상습 범위반사업자(시정조치 3회 이상 벌점 4점 초과) 명단 공표 등
-3.0	•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의 위반에 따라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에 한함) • 공정위에서 공표하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4.0	• 대기업 임직원 또는 법인이 협력사와 관계에서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윤리와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 법인은 벌금형만 해당
-5.0	• 대기업 임직원이 협력사와 관계에서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윤리와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 법인은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없으므로 제외

- 임직원 또는 법인이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 감점 적용 가이드라인
- 임직원 비리에 대한 검찰(경찰) 수사의 원인이 기업 자정활동(내부 감사 등)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인 경우 감점 대상에서 제외
- 기업의 신고 또는 고발 없이 임직원 비리에 대해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각 사건 내용을 심의하여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인지 확인
- 대기업의 지위 또는 위치를 남용,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협력사)을 강박하여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
- * 대기업 임직원과 모의 또는 공모 등 협력사의 적극행위로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 해당 위법행위가 단순 개인 비리가 아닌 기업에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직적·관행적 행위인지 여부
- * 위법 행위의 기간, 성격, 행위자의 범위 및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붙임 4 선정 평가 세부 기준

□ 평가항목 및 점수

평가 항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상생협력 활동 실적별	중요도·난이도	25~21	20~16	15~11	10~6	5
	이행 노력	25~21	20~16	15~11	10~6	5
	추진 성과	50~41	40~31	30~21	20~11	10
합 계		100점 ~ 20점				

□ 평가항목별 주요 내용

평가 항목	검토 주요 내용
중요도·난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협력 활동 실적이 중소기업 등의 성장에 기여 하는가? ▶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인가? * ESG경영, 탄소중립,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 등 ▶ 내외부 갈등, 반발 등으로 추진이 쉽지 않은 과제인가? ▶ 관련 산업 내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가? ▶ 기타, 기업 입장에서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상생협력 활동인가?
이행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인력 및 인프라 등을 적극 활용하였는가? ▶ 협력 기업 등과 의견 청취 및 네트워킹 노력 등에 기울였는가? * 워크숍 개최, 정기적 회의 등 온·오프라인 소통 노력 여부 ▶ 외부 인력 및 기관, 기업 등과 협업이 이루어졌는가? ▶ 최고경영자의 관련 대내외 공표 및 의지 표명이 있었는가? ▶ 기타, 상생협력 활동 등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
추진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협력 활동으로 추진실적 및 성과가 있는가? * 추진실적, 관련 긍정적 통계 등 구체적인 성과 및 효과 여부

□ 평가 방법

- 전문가별 평가항목 합산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제외하여 평균값 산출하여 최종점수 산정
-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과락으로 처리하여 선정 제외